

●태안해양경찰서공고 제2025-22호

「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」 제10조(출입통제 등)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출입통제구역을 지정하였기에 공고합니다.

2025년 08월 18일

태안해양경찰서장

가경주항 해역 모래톱 출입통제구역 지정 공고

□ 출입통제구역 지정

- 지정사유: 고립·익수 등 연안 인명사고 예방
- 소재지: 가경주항 해역 모래톱(충남 태안군 고남면 소재)
- 지정일: 2025. 9. 8.
- 통제기간: 2025. 9. 8. ~ 지정 해제 시까지
- 통제시간: 야간(일몰 후 30분 ~ 일출 전 30분)
- 대상: 출입통제구역 내 진입자(선박승선자 제외)
- 법적제재: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- 범위

가: 36°24'13.71"N 126°24'34.68"E	나: 36°24'02.49"N 126°23'19.71"E
다: 36°23'50.06"N 126°23'19.71"E	라: 36°23'34.80"N 126°23'46.62"E
마: 36°23'34.80"N 126°24'21.33"E	바: 36°23'44.19"N 126°25'07.31"E

위 각 호(가~바)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내측 모래톱 구역

